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·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2월 1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5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12월 1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금천구민의 직장운동경기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서포터즈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, 제8조)
-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금천구청에서 운영 중인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한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 - 서포터저 :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에 관심을 가지고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,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, 제8조)
 - 활동 : 직장운동경기부 응원 및 지원활동
 - 구성 : 50명 이내, 임기 1년
-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 - 활동 물품 지원 : 단체복, 응원도구, 홍보물 등
 - 상해보험 가입

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에 대한 운영 및 지원 등을 규정하여 직장체육 진흥 및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,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이와 관련하여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, 스포츠클럽 등 금천구를 대표하는 체육 활동 및 경기 등에도 본 서포터즈의 활동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